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2) 펀드명 변경
3)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매매,평가이익 유보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파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6. 신설> ③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6. 모자형(자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 이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고 제4항 각호 이외의 다른 종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 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제1호를 제외하고 삭제
제 25 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 조항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조항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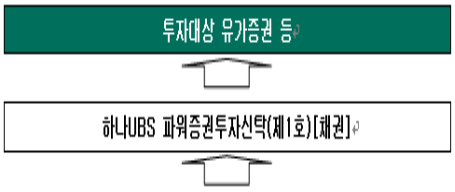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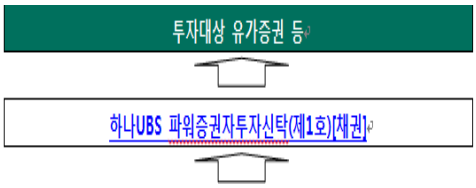
	[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⑩ 신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8 항 (신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다. <신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 **투자비율**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7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주요투자대상 : 국내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 투자목적 :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조직적 리스크 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주요투자대상 : 채권 60%이상(국공채 50%이상),

• 투자목적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 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단기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추구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

<table>
<tr><td></td><td></td><td>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td></tr>
<tr><td></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또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r><td></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표 삭제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d>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td><td>-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td></tr>
<tr><td>기타</td><td colspan="2">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
</table>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td></tr>
</table>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의 취득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전단에 따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별첨 1> 참조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제 1 호) [국공채] : <별첨 2> 참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신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0% 이상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Benchmark)
: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 년구간) 30% + 회사채(1-3 년구간) 55% + BB 급(3 월-1 년) 1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 및 어음에 10% 수준 투자) 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 급(3월-1년) 1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

		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가. <내용 동일>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

		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운용전략** 1) 고객 Needs에 부합한 장기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정기예금이율 + "Alpha" 수익 목표 - 절대수익추구를 위해 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집중투자 - Medium Risk Taking 전략구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 저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만기 선택 2)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 전략적 투자의사 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 (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 의견, 투자의사 결정) 3)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 "Alpha" 수익 창출 -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4) Portfolio 전략  **(2) 참고지수(Benchmark)** **: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 년구간) 30% + 회사채(1-3 년구간) 55% + BB 급 (3 월-1 년) 1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 및 어음에 10%수준 투자)하는 채권

		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 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법 시행령제 94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 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1) 운용전략** 1)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2)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2) 비교지수(Benchmark)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

		교를 위하여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1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험이 있습니다.	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신설>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주 1) 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면제되었습니다.	**1.재무정보** 주 1)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 240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 별첨 1 >

□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사모사채권 : 5%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포함)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3.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4.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5.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6.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7.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8.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9.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별첨 2 >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국공채]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국공채: 5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 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이하 "채권"이라 함)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이하 "국공채"라 함) -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위등급이어야 함)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라.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td><td>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분류
<추가></td><td>분류
모자형</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td>
<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채권</td><td>60% 이상</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채권
(국공채 50% 이상)</td><td>60% 이상</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
</tr>
<tr>
<td></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및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 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의 집합투자증권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 위험 관리합니다.</td>
<td>[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td>
</tr>
</table>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펀드명변경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 (신설)	제7호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제2항제5호신설	5. 모자형 (자투자신탁)
	제3항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4항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 모투자신탁 이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1. 제3조제3항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본문 및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제7호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3항 삭제
제25조의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생략)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생략)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생략)	①(생략, 현행과 동일)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생략)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

		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9항 (신설)	⑨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제39조의 2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생략)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 (신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시 및 보고서 등)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신설) (제목 추가) (도표) 1. 채권, 투자대상 내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별첨 1> 참조 (모투자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 증권모투자신탁(제 1호)[채권] (도표) 1. 채권, 투자대상 내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취득 시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용

	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 어음, 투자대상 내역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평가등급이 취득 시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 어음, 투자대상 내역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취득 시A3-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신설)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별첨 2>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투자제한 (신설) (제목 추가) (도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	나. 투자제한 (자투자집합투자기구) <별첨 3> 참조 (모투자집합투자기구) (도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생략)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생략)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전단에 따라 (생략, 현행과 동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생략, 현행과 동일)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신설) 가. 투자전략 (제목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 증권모투자신탁(제 1호)[채권]

		가. 투자전략
	(신설)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별첨 4> 참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삭제)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추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추가)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 지 아 니 할 수 있 습 니 다 .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추가)	나. 과세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감면세액 추징	(3) 감면세액 추징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재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주2)에 따라 해지 전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주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4) 소득공제추징 -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상당하는 금액 (이하 "추징 세액 "이라 함)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해지 전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6) (신설)	(6)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생략, 현행과 동일)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생략, 현행과 동일)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td><td>하나UBS 장기주택마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td></tr>
<tr><td rowspan="2">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r><td>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td><td>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모자형</td></tr>
<tr><td rowspan="3">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표, 신설)</td><td>[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 하나 UBS 주택마련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td></tr>
<tr><td>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60% 이상 투자)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r><td>2. 투자전략
(신설)</td><td>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 하나 UBS 주택마련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table>※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UBS</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 이상, 어음 40%</td></tr></table></td></tr>
</table>

주택마련 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채권]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UBS 퇴직연금 장기증권 모투자신탁[국공채]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하나UBS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채권]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기본 Fund Duration : 1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제목 추가)

(신설)

	3. 운용전문인력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신설) 3. 위험관리 (추가)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Benchmark):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포함)

별첨 1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70% 이상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별첨 2>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단, 잔존만기 1년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

		위등급이어야 함)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별첨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및 환매 조건부매수	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첨 4>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Benchmark)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2.1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

	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투자대상** / **펀드코드**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투자대상** / **펀드코드**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5364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어음 40%이하
	투자목적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 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53646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5396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어음 40%이하
	투자목적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 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table>
<tr><td></td><td></td><td>등록 신청일</td><td>2009. 4. 14</td><td></td><td>등록 신청일</td><td>2009. 4. 14</td></tr>
<tr><td></td><td colspan="3"></td><td rowspan="3">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주요투자대상</td><td>채권 60%이상, 어음 40%이하</td></tr>
<tr><td></td><td colspan="3"></td><td>투자목적</td><td>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td></tr>
<tr><td></td><td colspan="3"></td><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 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colspan="3">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 colspan="2">100% 이하</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적극운용 증권모투</td><td>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td></tr></table></td><td colspan="3">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 colspan="2">100% 이하</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td><td><u>70% 이상</u></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td></tr></table></td></tr>
</table>

자신탁 [채권]	위내를 말함)	집합투자기구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3) 기타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추가>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용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단, 잔존만기 1 년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위등급

				이어야 함)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아.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2) 투자제한	

<table>
<tr>
<td></td>
<td><추가></td>
<td>- <u>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u>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적용예외</th></tr>
<tr><td>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td><td>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td><td></td></tr>
<tr><td>동일종목투자</td><td>-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td><td>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td></tr>
</table>
</td>
</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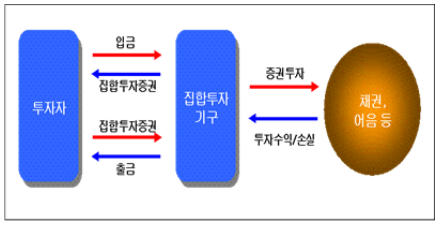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table>
<tr><td></td><td></td><td><table><tr><td>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td><td>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td><td></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90%수준</td></tr></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u>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u></td><td><u>70%이상</u></td></tr></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u>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u>
<u>가. 투자전략</u>
<u>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u>

■ <u>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u>
• <u>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u></td></tr>
</table>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Benchmark)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90% 수준**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0% 이상**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 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2.1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2.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

	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5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5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70% 이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50% 수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50% 수준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회사채] 70% 이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Ⅱ.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td><td>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
[국공채]</td><td>50%수준</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
[회사채]</td><td>50%수준</td></tr>
</table>
</td><td>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
[국공채]</td><td rowspan="2">70% 이상</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
[회사채]</td></tr>
</table>
</td></tr>
</table>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변경내용: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3)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6)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전환 기준시간 변경

3. 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제2조 (용어의 정의)	제9호 (신설)	9.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제2항 제6호 (신설) 제3항 (신설) 제4항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으로 한다. ② 6. 모자형 (자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1. 제3조제3항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본문 및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 제7호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3항 삭제
제25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1항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제1항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3.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탁(제1호)[주식]
제28조의 2 (투자신탁의 전환)	제4항 1. (생략) 15시 경과 후에 (생략) 2. (생략) 15시 경과 후에 (생략) 제6항 (생략)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 (생략)	제4항 1. (생략, 현행과 동일) 15시30분 경과 후에 (생략, 현행과 동일) 2. (생략, 현행과 동일) 15시30분 경과 후에 (생략, 현행과 동일) 제6항 (생략, 현행과 동일) 15시30분이전까지로 하되, 15시30분경과 후 (생략, 현행과 동일)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생략)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제 9 항 (신설)	⑨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 (신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도표) 주요투자대상 (내용, 추가) 주요투자목적 (내용, 추가) 주요투자전략 (내용, 추가) 기타유의사항 (내용: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상 투자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도표) 주요투자대상 (내용, 모투자신탁) 주요투자목적 (내용,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내용, 모투자신탁) 기타유의사항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상 이므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신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신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별첨 2> 참조
	(제목 추가)	(모투자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신설)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별첨 3> 참조

	나. 투자제한 (신설) (제목 추가) (도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자투자집합투자기구) <별첨 4> 참조 (모투자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도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제목추가) 가. 투자전략 (신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추가) 나. 환매 (추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 전환 (1) 1)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3) (생략)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 (생략)	다. 전환 (1) 1)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3)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3) (생략, 현행과 동일) 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 (생략, 현행과 동일)
	(4) (생략)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 (생략) 1) 15 시 경과 후에 2) 15 시 경과 후에	(4) (생략, 현행과 동일)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생략, 현행과 동일) 1) 15 시 30 분 경과 후에 2) 15 시 30 분 경과 후에
	(5) 1)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 2)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	(5) 1) 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생략)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생략) (도표) 15 시 -(생략)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생략)	(6) (생략, 현행과 같음) 15 시 30 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생략, 현행과 같음) (도표) 15 시 30 분 -(생략, 현행과 동일) 15 시 30 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생략, 현행과 같음)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집합투자기구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생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생략, 현행과 동일)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td><td>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td></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전환형</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전환형, 모자형</td></tr>
<tr><td rowspan="2">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표, 신설)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 등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r>
<tr><td>2. 투자전략
(신설)</td><td>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table>※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td></tr>
</table>

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목 추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실설)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호)[채권]

■ 기본 Fund Duration : 1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Benchmark):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3. 운용전문인력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신설) 3. 위험관리 (추가)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포함)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1)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3)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전환절차 및 방법 1)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별첨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 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별첨 2>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0% 이상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별첨 3>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단, 잔존만기 1 년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위등급이어야 함)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5.금리스왑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6.집합투자증권 등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차.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6.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7.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8.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9.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별첨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첨 5>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1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 비교지수(Benchmark)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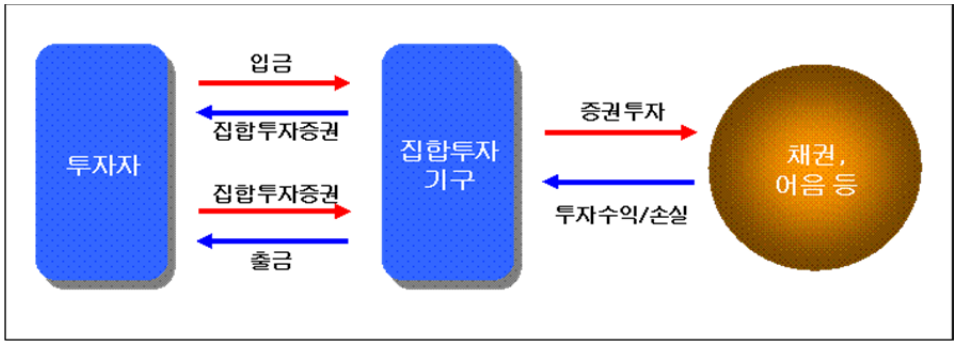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2.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펀드명 변경
   -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 <신설>	7.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2항 5호 <신설> 제3항 <신설> 제4항 <신설>	5.모자형(자투자신탁)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제1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1.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제17조 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1.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3항 삭제
제25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1항제1호 재무상태표	제1항제1호 대차대조표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 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제9항 (신설)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⑨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펀드명칭 변경**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펀드명칭 변경**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모자형(자펀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모자형
	나. <신설>	나.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
<td></td>
<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
<td>
<table>
<tr><td>투자대상</td><td>투자비율</td></tr>
<tr><td>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 투자신탁[주식]</td><td>70%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 1]
</td>
</tr>
<tr>
<td></td>
<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
<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
</tr>
<tr>
<td></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table>
<tr><td>투자대상</td><td>투자비율</td></tr>
<tr><td>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td><td>60% 이상</td></tr>
<tr><td>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td><td>40% 이하</td></tr>
<tr><td>유동성자산</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r><td>기타</td><td></td></tr>
</table>
나.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 등)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가.투자대상
[별첨2]

나.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
이하 삭제

다. 기타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 제1호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td>
</tr>
</table>

	아니 됩니다.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신설)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모투자집합투자기구] [별첨3]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1) 운용전략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1) 운용전략 [별첨4]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신설) 나. 환매 (신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략)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관한 사항	용(백만원) 라.운용자산규모	(백만원) (업데이트) 라.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신설>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현행과 동일)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모자형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신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하나UBS 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하나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200인덱스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 투자대상	(2) 투자대상

<table>
<tr>
<td></td>
<td>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td><td>60% 이상</td></tr>
<tr><td>채권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td><td>40% 이하</td></tr>
<tr><td>유동성자산</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
<td>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td>
</tr>
<tr>
<td></td>
<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신설)</td>
<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td><td>60%이상</td></tr>
<tr><td>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td><td>40%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이하</td></tr>
<tr><td>어음</td><td>40%이하</td></tr>
</table>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주식</td><td>60%이상</td></tr>
<tr><td>채권</td><td>40%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이하</td></tr>
<tr><td>어음</td><td>40%이하</td></tr>
</table>
</td>
</tr>
<tr>
<td></td>
<td>2. 투자전략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1) 기본운용방침
- 주식 현물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복제대상 주가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주식 등 편입비중 최대한 유지.
- 주가지수선물 등이 저평가될 경우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정분을 주가지수선물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초과수익</td>
<td>2. 투자전략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td>
</tr>
</table>

	획득추구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복제대상 주가지수와 운용성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복제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KOSPI200구성종목을 구성비에 따라 편입하여 지수와 동일한 가치변동성을 갖도록 하되, 신용위험이 높거나 지수영향력이 미미한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배제 또는 유사종목으로 대체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 (1) 기본운용방침 - 주식 현물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복제대상 주가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주식 등 편입비중 최대한 유지. - 주가지수선물 등이 저평가될 경우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정분을 주가지수선물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초과수익 획득추구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복제대상 주가지수와 운용성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 복제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KOSPI200 구성종목을 구성비에 따라 편입하여 지수와 동일한 가치변동성을 갖도록 하되, 신용위험이 높거나 지수영향력이 미미한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배제 또는 유사종목으로 대체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기본운용방침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하도록 합니다.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비교지수인 KOSPI 200 종목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을 후보종목으로 선정 -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으로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시 KOSPI 200 을 95% 이상 추적 가능 - 종목별 재무위험 및 시장유동성을 고려하여 100 ~ 120 여개 종목으로 최종포트폴리오를 구성 . 규모 :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총계 . 시장유동성 : 거래대금 . 재무위험 :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 증자 및 감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으로 상장주식수 변동 시 *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100~120여개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3. 운용전문인력	

[별첨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KOSPI200 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KOSPI200 지수 추적을 위한 현물(주식) 바스켓은 구성종목의 시가비중, 유동성,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주가지수와의 운용성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투자비중이 KOSPI200 지수의 업종별 투자비중과 유사하게 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200 인덱스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KOSPI200 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 추적오차(Tracking Error)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추적오차 및 시장대비 변동성을 일간 단위로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축소하도록 합니다.

[별첨2]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70% 이상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별첨3]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

가.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60%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함)
2.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함)
3.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5.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하	
6.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100%이하로함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10.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카.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기타 제한 사항

(1)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소각

2.매도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이하 "주식"이라 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이하 "채권"이라 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함)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5.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10%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 법인 발행 지분 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 증권에의 투자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 목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바.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가목 및 나목만 해당)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소각
  2.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

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첨4]

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략

[모집합투자기구] 인 Best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

1) 기본운용방침

■ 주식 현물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복제대상 주가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주식 등 편입비중 최대한 유지.

■ 주가지수선물 등이 저평가될 경우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정분을 주가지수선물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초과수익 획득추구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복제대상 주가지수와 운용성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 복제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KOSPI200 구성종목을 구성비에 따라 편입하여 지수와 동일한 가치변동성을 갖도록 하되, 신용위험이 높거나 지수영향력이 미미한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배제 또는 유사종목으로 대체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기본운용방침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하도록 합니다.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비교지수인 KOSPI 200 종목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을 후보종목으로 선정

-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으로 인덱스 포트폴리오구성시 KOSPI 200 을 95% 이상 추적 가능

■ 종목별 재무위험 및 시장유동성을 고려하여 100 ~ 120 여개 종목으로 최종포트폴리오를 구성

- 규모 :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총계
- 시장유동성 : 거래대금
- 재무위험 :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 증자 및 감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으로 상장주식수 변동 시

*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100~120여개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 12. 1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3.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다.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하나UBS 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의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수준으로 한다. 마.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수준으로 한다.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33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table>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46</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75</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46</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75</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J953</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주요투자대상 : 채권60%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어음 40%이하
· 투자목적 : 장기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td></tr>
</table>

		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목적 :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

<table>
<tr><td></td><td>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2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 colspan="2">100% 이하</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8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 내를 말함)</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1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 내를 말함)</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잔존만기 1 년 미만)</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td><td>10% 수준 (수준이라</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td></tr>
</table></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 colspan="2">100% 이하</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 [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및 채권 60%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어음 40%이하에 투자하는 국공채형 집합투자기구</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20% 이하</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잔존만기 1 년 미만)</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td><td>20% 이하</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함은 ±10% 범위 내를 말함)</td><td>기구</td></tr>
</table>
</td>
<td>
<table>
<tr><td>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td><td>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신설>
</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1.채권</td><td>60% 이상</td><td>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단, 잔존만기 1 년이상</td></tr>
</table>
</td>
</tr>
</table>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위등급이어야 함)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

등		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 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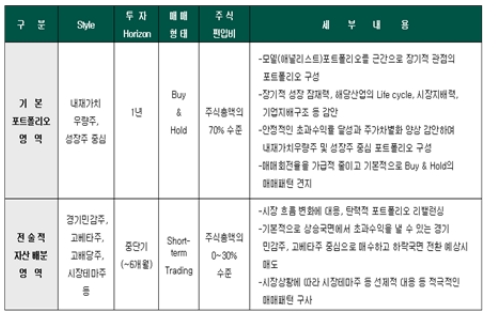
<table>
<tr><td></td><td>(2) 투자제한
<추가></td><td><table><tr><td></td><td>이내인 상품에 한함)</td></tr></table>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 모투자신탁[국공채]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80% 수준</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10% 수준</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 수준</td></tr></table>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 이상</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20% 이하</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20% 이하</td></tr></table>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 퇴직연금장기증권 /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td></tr>
</table>

	<신설>	2)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자산구성 전략 기본 Portfolio 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비교지수(Benchmark

	<신설>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u>5)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u>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

		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 운용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

구 분	Style	투자 Horizon	매매 형태	주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멀(해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해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라.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투자신탁재산의 80% 수준)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투자신탁재산의 10% 수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10% 수준을 대형우량주, 업종대표주 및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80% 수준**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	**10% 수준**	■ 기존 펀드 듀레이션 : 0.5 년 ± 0.3 년 범위내에서 관리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대형우량주, 업종대표주 및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이상**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투자신탁, [채권]		대상으로 한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금리의 등락에 상관없이 콜금리 이상의 수익률 달성 가능하도록 운용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Dealing Position: 펀드 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0% 수준**	■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 자산배분전략(주식편입비 조정)과 종목 선정 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 실현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 이하**	■ 기존 펀드 듀레이션 : 0.5 년 ± 0.3 년 범위 내에서 관리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금리의 등락에 상관없이 콜금리 이상의 수익률 달성 가능하도록 운용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 이하**	■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 자산배분전략(주식편입비 조정)과 종목 선정 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 실현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 역량 결집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 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국내채권 6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를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1 년 미만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국내채권 60% 이상 (주로 잔존만기 1 년 이하)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국내주식 60% 이상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 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 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 장기증권 모투자신탁[국공채]	장기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국내 채권 60%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 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를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1 년 미만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이상 (주로 잔존만기 1 년 이하)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국내 주식 60%이상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내주식 60%이상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 12. 1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6.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하나UBS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8. 하나UBS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9.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바.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 "하나UBS 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라. "하나UBS 퇴직연금적극운용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마. "하나UBS 퇴직연금단기안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

	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수준으로 한다. 아.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수준으로 한다.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바.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제 33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고서 등)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table>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46</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75</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46</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53675</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
<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J953</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주요투자대상 : 채권60%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어음 40%이하
・투자목적 : 장기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td></tr>
</table>

		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목적 :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및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

<table>
<tr><td></td><td>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 colspan="2">100% 이하</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6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 내를 말함)</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1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 내를 말함)</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잔존만기 1년 미만)</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td><td>30% 수준 (수준이라</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td></tr>
</table>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 colspan="2">100% 이하</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 [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국공채]</td><td>50% 이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및 채권 60%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어음 40%이하에 투자하는 국공채형 집합투자기구</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20% 이하</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잔존만기 1년 미만)</td></tr>
<tr><td>하나 UBS 퇴</td><td>40% 미만</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함은 ±10% 범위 내를 말함)</td><td>기구</td></tr>
</table>
</td>
<td>
<table>
<tr><td>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td><td>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신설>
</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1.채권</td><td>60%이상</td><td>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td></tr>
</table>
</td>
</tr>
</table>

				단, 잔존만기 1 년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위등급이어야 함)
		4.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입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 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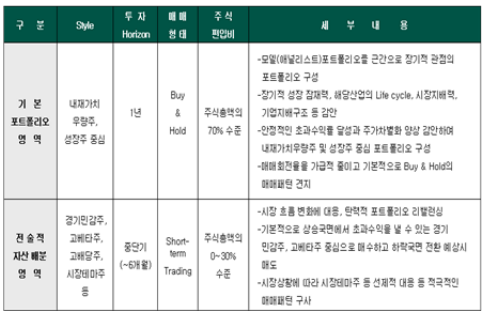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table>
<tr>
<td></td>
<td>(2) 투자제한
<추가></td>
<td>
<table>
<tr><td></td><td>까지 투자가능</td></tr>
<tr><td>8.환매조건부 매매</td><td>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td></tr>
<tr><td>9.증권의 대여</td><td>증권 총액의 50%이하</td></tr>
<tr><td>10.증권의 차입</td><td>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td></tr>
<tr><td>11.기타</td><td>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
<tr><td>유동성 자산</td><td>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td></tr>
</table>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60% 수준</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10% 수준</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0% 이상</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20% 이하</td></tr>
</table>
</td>
</tr>
</table>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40% 미만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적극운용, 퇴직연금장기증권 /단기안정모투자신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2)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Benchmark)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신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5)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 운용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구 분	Style	투자 Horizon	매매 형태	주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멸(해달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배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데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데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

		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라.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신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것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적극운용모투자신탁,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단기안정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60% 수준**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50% 이상**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 [채권]	**10% 수준**	기존 펀드 듀레이션 : 0.5년 ± 0.3 년 범위내에서 관리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금리의 등락에 상관없이 콜금리 이상의 수익률 달성 가능하도록 운용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50% 이상**	■ 기본 Fund Duration : 1년이상 관리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자산배분전략(주식편입비 조정)과 종목 선정 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 실현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 이하**	■ 기존 펀드 듀레이션 : 0.5년 ± 0.3년 범위내에서 관리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금리의 등락에 상관없이 콜금리 이상의 수익률 달성 가능하도록 운용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 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를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1 년 미만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주로 잔존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 자산배분전략(주식편입비 조정)과 종목 선정 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 실현	**40% 미만**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0~3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장기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채권에의	

		만기 1 년 이하)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국내 주식 60% 이상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하나 UBS 퇴직연금단기안정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주로 잔존만기 1년 이하)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국내 주식 60% 이상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5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1) 모투자신탁 추가

2)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미만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미만으로 한다.

제 25 조의 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표)
<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td><td>53677</td></tr></table>
(그림 삭제)</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표)
<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53960</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tr><td>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J953</td></tr></table></td></tr>
<tr><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 1)</td></tr>
<tr><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u>으로 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u>으로 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First Class 연금주식모투자신탁에 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td><td>40%미만</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table></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td><td>40%미만</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table></td></tr>
</table>

신탁 [주식]		

신탁 [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신설) (2) 투자제한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보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별첨 2) (2) 투자제한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신설)	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별첨 3)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td><td>60% 이상</td></tr></table>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td><td>60% 이상</td></tr></table>

	탁[국공채]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40% 미만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공채]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40% 미만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alance모투자신탁, First Class연금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3)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별첨 4)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요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 주식모투자신탁, First Class 연금증권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장기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40%이내에서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저평가 중소형주에 균형투자하는 Balance주식모투자신탁, First Class 연금증권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td></tr>
<tr><td></td><td>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60% 이상</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미만</td></tr></table></td><td>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60% 이상</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미만</td></tr><tr><td>하나 UBS First Class</td><td></td></tr></table></td></tr>
</table>

	3. 운용전문인력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별첨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별첨2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 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별첨3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조건부매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별첨4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3)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 자 Horizon	매 매 형 태	주 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델(애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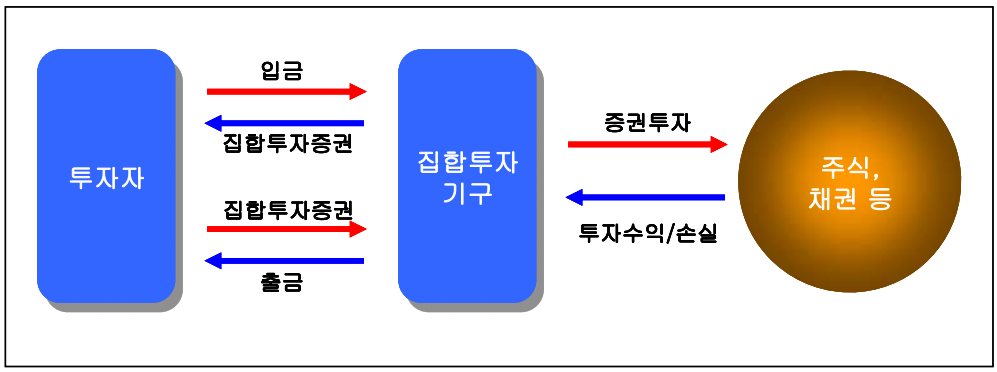
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라.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Balanc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2.1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의 해지)	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3677</td></tr><tr><td>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BK128</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colspan="2"><신설></td></tr>
</table>
</td>
<td>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 UBSFirst 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td>주요 투자대상</td><td>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td></tr>
<tr><td>투자목적</td><td>업종대표주 및 시장 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td></tr>
<tr><td>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자산배분전략(주식편입비 조정)과 종목선정 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과수익 실현</td></tr>
</table>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모신탁 수익증권</td><td colspan="2">100% 이하</td></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td><td>90% 수준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td></tr>
</table>
</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하나 UBS FirstClass</td><td>70% 이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d>
</tr>
</table>

	<table><tr><td></td><td>를 말함)</td><td>구</td></tr></table>	<table><tr><td>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td><td></td></tr></table>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추가>** 2) 투자제한 **<추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2) 투자제한 -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별첨1 참조>**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90% 수준</td></tr>
</table>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70% 이상</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별첨2 참조>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td>
<td>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td>
</tr>
</table>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명** / **투자목적** <추가>	**[1]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명** / **투자목적** **하나 UBSFirst** 주요투자대상 / 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40%이하
	투자목적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2)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UBS 퇴직연금 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수준
유동성자산	10% 이하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UBS 퇴직연금 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수준
유동성자산	10% 이하

.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모펀드	투자비율
<추가>	

.

(2)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UBS 퇴직연금 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70% 이상
유동성자산	10% 이하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UBS 퇴직연금 Balance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70% 이상
유동성자산	10% 이하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모펀드	투자비율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	■기본운용방침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으로 장기 자본이득 추구와 더불어

		호)[주식]	시황변동에 따른 주식 편입비 전략을 병행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기본적 포트폴리오는 업종 대표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구성 업종대표주뿐만 아니라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 병행 ■자산배분 전략 기본적으로 주식편입비 90%이상 유지하며 장기 자본이득 추구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주식 편입비 조정 (최저 편입비 60%) ■리스크 관리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별첨1

1) 투자대상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

		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 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별첨 2

-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 자 Horizon	매 매 형 태	주 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델(애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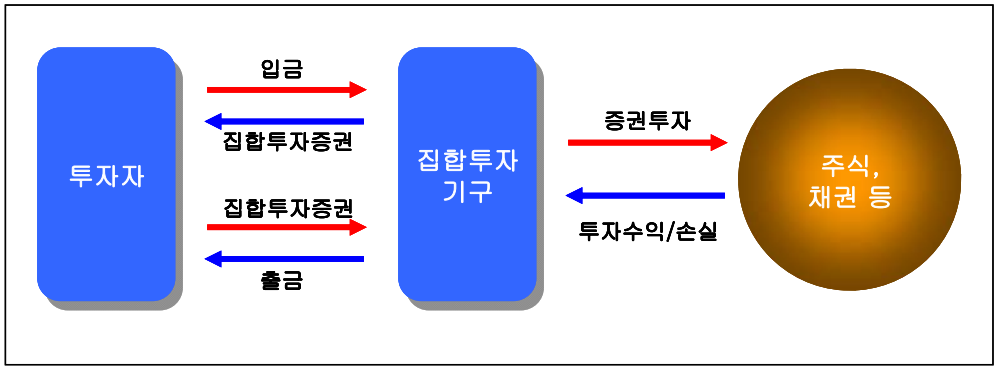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201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2.1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4.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3.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수준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 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으로 한다.
제 33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90%수준</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수준</td></tr></table>[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td><td>70%이상</td></tr><tr><td>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20%이하</td></tr></table>[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별첨1</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 증권모투자신탁</td><td>90% 수준</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td></tr></table></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 증권모투자신탁</td><td>70% 이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td></tr></table></td></tr>
</table>

	[채권]			[채권] 하나 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0% 수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하나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20%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나. 모집합투자기구 <신설>	***별첨 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 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 UBS 퇴직연금매칭10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호)[주식]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 3**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Ⅱ.집합투자	**[1] 투자전략**	**[1] 투자전략**

기구의 투자정보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90%수준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0%수준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기간의 목표를 10 년으로 하고 투자기간과 만기가 일치하는 채권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여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국내 주식 60% 이상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0%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20%이하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투자비중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국내 채권 60% 이상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달성을 추구	국내 주식 60% 이상
하나 UBS 퇴직연금매칭 10 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기간의 목표를 10 년으로 하고 투자기간과 만기가 일치하는 채권에 투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여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	국내 채권 60% 이상

			익 추구	
		하나 UBS 퇴직연금 Balanc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균형(Balance)있게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국내 주식 60% 이상

***별첨 1**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어음 40%이하
	투자목적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 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업종대표주 및 시장테마주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달성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 유망종목 발굴

*** 별첨2**

1) 투자대상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평가등급이 편입일 기준 최상위등급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단, 잔존만기 1 년이상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

		가등급이 편입일기준으로 최상위등급이어야 함)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증권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	

수	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호)[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u>*별첨 3</u>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 년이상을 기준으로 장기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단기채권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합니다.

■ 기본 Fund Duration : 1 년이상 관리

- 금리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편입자산은 만기매칭중심으로 운용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기본 Portfolio에 대한 Duration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및 추가수익 추구
- 유동자산 편입비는 5%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자산구성 전략

- 기본 Portfolio를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만기조정
- Dealing Position: 펀드자산의 일정부분을 국고, 통안, 정부보증 특수채 등 활용
- Spread 거래 / Arbitrage 거래: 펀드자산의 10% 이내 수준에서 현선물 등을 활용 초과수익 추구

■ 비교지수(Benchmark)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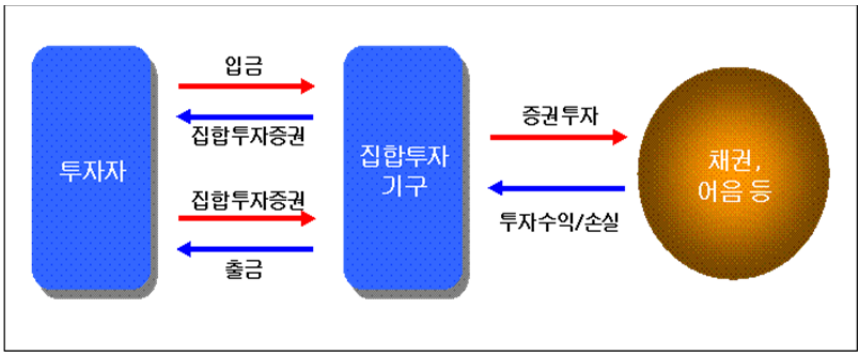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 자 Horizon	매 매 형 태	주 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델(애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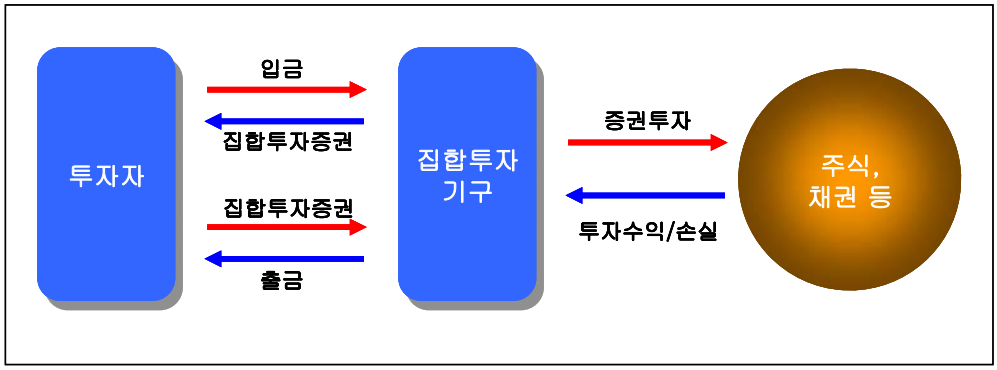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

2. 주요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2)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3)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채권은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주식은 KOSPI 200 인덱스 수익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

	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으로 한다.	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으로 한다.
제 25 조의 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투자대상: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1688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 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5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5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 50%미만 투자대상 내역: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3) 기타제한사항	(3) 기타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 추가)	**-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모투자신탁 추가)	-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2)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미만</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table>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3)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기본운용방침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합니

		다.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하도록 합니다.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비교지수인 KOSPI 200 종목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을 후보종목으로 선정 -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으로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시 KOSPI 200 을 95% 이상 추적 가능 ■ 종목별 재무위험 및 시장유동성을 고려하여 100 ~ 120 여개 종목으로 최종포트폴리오를 구성 - 규모: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총계 - 시장유동성: 거래대금 - 재무위험: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 증자 및 감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으로 상장주식수 변동 시 *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100~120 여개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 KOSPI 200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KOSPI2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하여(KOSPI 200 지수 X 100%)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 KOSPI200 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 추적오차(Tracking Error)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추적오차 및 시장대비 변동성을 일간 단위로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축소하도록 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KOSPI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신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지수)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주로 주식 현물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인덱스운용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인덱스바스켓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수 복제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상 오차, 지수선물의 roll over 에 따른 오차, 지수구성 종목의 변경, 빈번한 설정 및 해지, 그리고 거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인하여 추적하는 인덱스의 수익률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이 상이한 수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등을 공시할 것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40%미만에서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퇴직연금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미만을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퇴직연금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미만을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전략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 50%미만 /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 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 **투자목적** / **투자비중**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 주식 60% 이상
	3. 운용전문인력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별첨 1)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이하 "주식"이라 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이하 "채권"이라 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함)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5.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10%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마.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별첨 2)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단, 본문만 해당)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 목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가목 및 나목만 해당)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바.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2)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3)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채권은 신탁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년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주식은 KOSPI 200 인덱스 수익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으로 한다.	가.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으로 한다.
제 25 조의 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

		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투자대상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 A1688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 rowspan="3">하나 UBS 인덱스증권모 투자신탁[주식]</td><td>주요투자대상</td><td>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td></tr><tr><td>투자목적</td><td>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td></tr><tr><td>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d><td>-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td></tr></table>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미만</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table>
	(3) 기타제한사항	(3) 기타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 추가)	**-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	(2) 투자제한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모투자신탁 추가)	-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2)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퇴직연금인덱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신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td><td>30%미만</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td></tr></table>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퇴직연금인덱스 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3)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기본운용방침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합니

		다.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하도록 합니다.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비교지수인 KOSPI 200 종목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을 후보종목으로 선정 -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으로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시 KOSPI 200 을 95% 이상 추적 가능 ■ 종목별 재무위험 및 시장유동성을 고려하여 100 ~ 120 여개 종목으로 최종포트폴리오를 구성 - 규모: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총계 - 시장유동성: 거래대금 - 재무위험: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 증자 및 감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으로 상장주식수 변동 시 *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100~120 여개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 KOSPI 200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KOSPI2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하여(KOSPI 200 지수 X 100%)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 KOSPI200 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 추적오차(Tracking Error)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추적오차 및 시장대비 변동성을 일간 단위로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축소하도록 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KOSPI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신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지수)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주로 주식 현물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인덱스운용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인덱스바스켓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수 복제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상 오차, 지수선물의 roll over 에 따른 오차, 지수구성 종목의 변경, 빈번한 설정 및 해지, 그리고 거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인하여 추적하는 인덱스의 수익률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이 상이한 수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등을 공시할 것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40%미만에서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20%미만에서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미만에서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d></td><td>(모투자신탁 항목 추가)</td><td>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전략</th></tr>
<tr><td>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td><td>30%미만</td><td>■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 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td></tr>
</table>
</td></tr>
<tr><td></td><td>(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항목 추가)</td><td>(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table>
<tr><th>모투자신탁</th><th>투자목적</th><th>투자비중</th></tr>
<tr><td>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td><td>국내 주식 60% 이상</td></tr>
</table>
</td></tr>
<tr><td></td><td>3. 운용전문인력</td><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able>

(별첨 1)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이하 "주식"이라 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이하 "채권"이라 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함)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5.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10%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사.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별첨 2)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단, 본문만 해당)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 목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가목 및 나목만 해당)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바.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3)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신설> <③ 신설>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모자형(자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하나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2.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순차적 연번 변경)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특히 금융업종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 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순차적 연번 변경)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 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조항 삭제>
제 25 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 조항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 26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조항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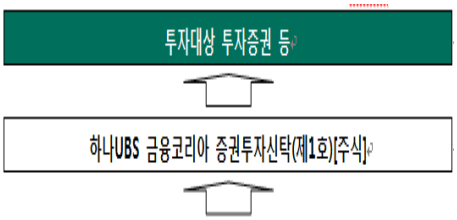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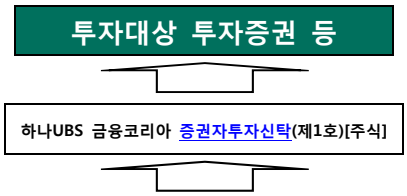
격 및 환매방법)	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 (생략)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생략)	① (생략)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생략)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⑩ 신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생략)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⑤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8 항 신설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다. 신설> .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모신탁(제 1 호)[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신탁(제 1 호) [주식] : 7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하나UBS 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별첨 1> 참조**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금융업종 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표 삭제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 [주식]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제 1 호) [주식] | 70% 이상 |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나 투자제한 (표 삭제) (2) 투자제한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신설>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투자 대상 / 투자 비율 ·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70% 이상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제 1 호) [주식] / 70% 이상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제목 추가> □ 하나 UBS 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내용 동일> □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제1호)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자 Horizon	매매 형태	주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멀(배블리스티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장상 감안해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기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 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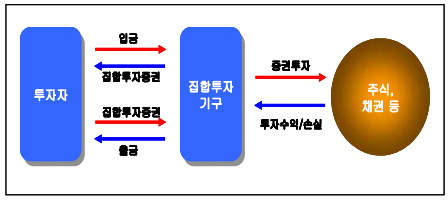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나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라.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신설>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 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금융업 종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금융업 종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able>
<tr>
<td></td>
<td>는 상품입니다.
(신설)

(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주식
(금융주에의 투자)</td><td>60% 이상
(60% 이상)</td></tr><tr><td>채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td>
<td>[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d rowspan="2">70% 이상</td></tr><tr><td>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주식
(금융주에의 투자)</td><td>60% 이상
(60% 이상)</td></tr><tr><td>채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
□ 하나 UBS First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주식</td><td>60% 이상</td></tr><tr><td>채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금융관련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금융관련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td>
<td>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td>
</tr>
</table>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신설) **3.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별첨 4> 참조 **■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별첨 5> 참조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 위험 관리합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별첨 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 60% 이상(금융업종관련 주식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주식 중 **금융업종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 중 금융관련 업종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주 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리서치팀과 연계

		강화로 운용역 독자판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담 조직에 의한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해 펀드의 위험을 관리 합니 다.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제 1 호)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이하, 어음에 40%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별첨 2 >

□ 하나 UBS 금융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금융주"에의 투자 : 60% 이상	주식을 발행한 기업 중 은행, 증권 및 보험 등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 등 금융(Finance) 관련 업종에 속한다고 판단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 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자.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별첨 3 >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제 1 호) [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30%까지 투자가능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별첨 4>

■ **하나 UBS 금융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

- 포트폴리오 분산 및 종목별 투자한도
  - • 주식편입비율 90% 이상
  - • 포트폴리오 분산 : 20~40종목
  - • 종목별 투자한도 : 1% ~ 10%
- 저유동성 종목 투자비중(테마펀드의 리스크관리)
  - • 장기투자에 입각하여 구성하되 유동성 리스크 최소화
  - o 저유동성 종목은 종목별 펀드순자산의 1.5% 미만 유지
  - o 저유동성 종목군은 펀드순자산의 5%미만 유지

<별첨 5>

■ **하나UBS First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 자 Horizon	매 매 형 태	주 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델(애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3)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4) 환매수수료 삭제

3. 변경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 (신설)	7.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 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제2항제5호 신설 제3항 <신설> 제4항 신설	5.모자형(자투자신탁)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자투자신탁 이외에 다른 자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제1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 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2. 제3조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3. 제 17 조 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 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 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4항 (삭제)
제25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 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9 항 (신설)	⑨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 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 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 (환매수수료)	제1항 ~ 제3항	(삭제)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과 동일)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삭제)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투자신탁[주식]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모자형(자펀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나.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 투자비율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70%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 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1)투자대상 (삭제) (2)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등) (3) 기타제한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신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투자대상 별첨 2 (2)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이하 삭제 (3) 기타제한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별첨 3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신설)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내용 현행과 동일)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모집합투자기구] (제목 신설)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내용, 현행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 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하 생략)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하 현행과 동일)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나. 환매 (신설)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 환매수수료 (삭제)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하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자투자신탁[주식]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하 생략) **분류** (신설)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분류** 모자형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으로 하여 (이하 생략) (신설) (2) 투자대상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2) 투자대상

<table>
<tr>
<td></td>
<td>(삭제)

(신설)</td>
<td>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70% 이상</td></tr>
<tr><td>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주식</td><td>60% 이상</td></tr>
<tr><td>채권</td><td>40% 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
</tr>
<tr>
<td></td>
<td>2. 투자전략
(신설)

(제목 추가)

(신설)</td>
<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하나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td>
</tr>
</table>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3. 운용전문인력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별첨 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넘버원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별첨 2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넘버원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70% 이상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 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별첨 3

나.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넘버원 변액보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제9조제 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6.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으로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8.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호 내지 4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 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 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 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 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 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 증권 투자제한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제외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

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 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She&Style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펀드명 변경
-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She & Style 증권 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She & Styl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 (용어의 정의)	제8호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신설)	6.모자형(자투자신탁)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 She & Style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순차적 연번 변경)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 자산 등)	제1항제1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3.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4.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4. 제3조 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5. 제17조 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일부 삭제	본문 (현행과 동일)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 제8호 삭제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3항 삭제
제25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동일)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하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하 현행과 동일)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 10 항 (신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하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하 현행과 동일)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제5호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제5호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She & Style 증권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She & Styl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모자형(자펀드) (모투자신탁이 발행 하는 집합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She & Style 증권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She & Styl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다. (신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 **투자비율**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70% 이상 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 70% 이상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 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하 생략)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도표삭제) 나.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등)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이하 생략)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이하 생략) (신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자집합투자기구 (1)투자대상 별첨 2 (2)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이하 삭제 (3)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이하 현행과 동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이하 현행과 동일) 나.모집합투자기구: 별첨 3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신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목신설)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설)	(현행과 동일)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별첨 4
	다. 수익구조 (신설)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목 신설)	[모집합투자기구] (현행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하 생략)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하 현행과 동일)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4.0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4.49%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신설) 나. 환매 (신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하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11.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신설)	**11.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

		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하 신설)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현행과 동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 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

		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 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2)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이하 생략)	(2)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이하 현행과 동일)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하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이하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현행과 동일)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현행과 동일)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She&Style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She&Styl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하 생략) **분류**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분류** 모자형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하 생략) (2) 투자대상 (도표 삭제) **2. 투자전략** (신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2) 투자대상 투자 대상 / 투자 비율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70% 이상 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 / 70% 이상 유동성 자산 / 10% 이하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하나UBS She&Style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존 운용전략과 동일)

	(신설) **3. 운용전문인력**	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 별첨4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4.02%**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4.49%**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첨 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투자목적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별첨 2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She & 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70% 이상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 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별첨 3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 이상** **"여성관련종목"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여성관련종목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 주식을 발행한 기업 중 공신력 있는 여성 선호도 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여성의 구매력이 우선시되는 업종, 여성 소비자에 대해 우월적인 판매정책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여성관련종목"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여성관련종목이었으나 이후 새로운 연도에 여성관련종목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된 주식은 여성관련종목으로 볼 수 있다.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4.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파.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및 환매 조건부매수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적용예외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등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 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첨 4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 분	Style	투 자 Horizon	매 매 형 태	주 식 편입비	세 부 내 용
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델(애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추가
   -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기준일자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3.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5호)[채권혼합] 4.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5.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3.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5호)[채권혼합] 4.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5.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6.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7.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8.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9.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10.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201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11.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

		12. 하나UBS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1호나목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1호나목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0조(한도 및 제	제4항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

한의 예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2016년12월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항 신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항 신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 증권자투자신탁[국공채]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 5 호)[채권혼합]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 2 호)[채권혼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 증권자투자신탁[국공채]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 5 호)[채권혼합] -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201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

<table>
<tr><td></td><td></td><td>- 하나UBS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td></tr>
<tr><td></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추가)</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First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td><td>64463</td></tr><tr><td>하나 UBS 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td><td>35951</td></tr><tr><td>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td><td>53678</td></tr><tr><td>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 2 호)[채권혼합]</td><td>53679</td></tr><tr><td>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2015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td><td>54451</td></tr><tr><td>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적극운용증권자투자신탁[채권]</td><td>53645</td></tr><tr><td>하나 UBS 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td><td>66540</td></tr></table></td></tr>
<tr><td></td><td>다. 퇴직연금상품구조도</td><td>다. 퇴직연금상품구조도 (삭제)</td></tr>
<tr><td></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td></tr>
<tr><td></td><td>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td><td>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td></tr>
</table>

	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위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대한 과세내용입니다.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위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연금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대한 과세내용입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신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신설)	(4)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5) 미국세금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 (신설)	(5)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6)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

	공통보고기준(CRS) (신설)	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생략),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생략, 현행과 동일),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사항 가. 의무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의무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2. 변경내용: 자투자신탁 추가 등
3. 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 [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First Class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 [주식] 2.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Balance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201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4.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5.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6.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5호)[채권혼합] 7. 하나UBS넘버원변액보험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UBSShe&Styl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9.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6-1. 주식, 장내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2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자펀드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Balanc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201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5호)[채권혼합] 하나UBS넘버원변액보험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She&Styl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추가
   - '취득 시' 신용등급 추가
   -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기준일자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일: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4.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5.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2. (생략)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생략)	2. (생략, 현행과 동일)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생략, 현행과 동일)
	4. (생략)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4. (생략, 현행과 동일)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7.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6호다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6호다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6호마목 (생략)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생략)	제6호마목 (생략, 현행과 동일)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생략, 현행과 동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4항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2016년12월1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항 신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

의 제한)	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항 신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

<table>
<tr><td></td><td></td><td>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td></tr>
<tr><td></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추가)</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table><tr><th>투자대상</th><th>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th></tr><tr><td>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td><td>62733</td></tr><tr><td>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 2 호)[채권혼합]</td><td>61315</td></tr><tr><td>하나 UBS 인 Best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td><td>31815</td></tr></table></td></tr>
<tr><td></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생략)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생략)

4. 어음: (생략),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채권: (생략, 현행과 동일)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생략, 현행과 동일)
4. 어음: (생략, 현행과 동일)),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td></tr>
<tr><td></td><td>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td><td>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td></tr>
</table>

	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

	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에 따라야 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미국세금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 (신설)	나. 과세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신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생략),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생략, 현행과 동일),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항 가. 의무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의무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투자신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

	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